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645

발의연월일: 2022. 9. 30.

발 의 자:이종배·성일종·박대수

구자근 · 김석기 · 송석준

윤주경 · 김예지 · 이채익

박수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공무원이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,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의해 역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해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 및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비 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6호의4 신설 및 안 제69조제1호 단서 등).

법률 제 호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6호의3 중 "3년"을 "5년"으로 한다.

제33조제6호의4를 제6호의5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4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제33조의2 중 "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"을 "제33조제6호의2·제6호의3 또는 제6호의4"로 한다.

제69조제1호 단서 중 "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"를 "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33조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	
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	
1. ~ 6의2. (생 략)	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	6의3
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	
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	
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	
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<u>3년</u>	
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<u>5년</u>
<u><신 설></u>	6의4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
	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
	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
	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
	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
	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
	<u>사람</u>
<u>6의4.</u> (생 략)	<u>6의5.</u> (현행 제6호의4와 같음)
7.・8. (생 략)	7.・8. (현행과 같음)
제33조의2(벌금형의 분리 선고)	제33조의2(벌금형의 분리 선고) -
「형법」 제38조에도 불구하고	
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	제33조제6호의2·제6호의3 또는
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	제6호의4

합범(競合犯)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.

제69조(당연퇴직) 공무원이 다음 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1.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 람으로서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| 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 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, 제3 3조제5호는 「형법」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, 「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」<u>제2조</u>,「아동·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 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.

69조(당연퇴직)
1
•
「성폭
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
례법」 제2조, 「스토킹범죄
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
<u>2조제2호</u>